

한국과 몽골의 무역과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유 병 옥*

-
- I. 서 론
 - II. 한국과 몽골의 무역과 투자
 - III. 몽골에서의 무역분쟁과 상사중재제도
 - IV. 몽골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응
 - V. 결 론
-

주제어 : 몽골중재제도, 몽골상공회의소, 몽골중재법원, 유엔중재모델법

I. 서 론

몽골은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내륙의 국가로서 중앙아시아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특히 천연자원에 있어서 세계 제10위권의 자원부국이기도 한 몽골은 1990년도 소련의 붕괴에 따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한 성장세에 있다. 1992년 이후 몽골은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전환과 더불어 일방적인 대러시아 의존경제에서 벗어나 독립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E-Mail : onlinesolve@naver.com

적인 실용경제를 통하여 몽골의 국제적 위상이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조건을 가진 몽골은 석탄, 동, 형석, 금, 석유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여전히 국토의 3/4이 미탐사 미개발지역으로서 광물자원에 대한 매력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특히 구리나 우라늄 추정 매장량이 세계 2위권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다.

외국의 무역상거래 당사자들에게도 몽골은 1997년 WTO에 가입하여 전세계 100여개 국가와 교역관계에 있는 실정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몽골은 현재 선진산업국과 전략적 무역관계를 통하여 기술 전수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몽골과 1990년 수교한 이후 점진적으로 무역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서의 잠재성과 함께 한국과 문화적 및 인종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안정적인 정치상황 등은 몽골이 가지는 투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몽골간의 무역관계가 더욱 증진되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가 두 나라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무역거래가 증대될 것이 기대되는 가운데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해결 방법으로써 국제적으로 대표주자인 중재제도는 무역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의미를 갖는다.

선행의 연구자들의 논제들은 아시아 권역의 국가를 선정할 때 주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및 교역규모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상거래분쟁과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며, 몽골을 고찰하고 있는 선행 연구는 몽골의 중재법이나 주요 특징을 다루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¹⁾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몽골의 상거래규모와 해외투자규모를 살펴보고, 국제거래상의 발생가능한 분쟁의 해결제도로써 몽골의 중재제도를 사례를 포함하여 한국의 중재법제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몽골중재제도를 법리적 및 실무적으로 고찰해 본다. 이를 통하여 몽골과의 국제상거래분쟁에 따른 중재제도의 적용과 그 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김중년, “주요 외국중재기관의 규칙개정 현황에 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12; 이경화, “중국의 상사중재관할권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12; 김선정, “몽골의 국제상사분쟁해결법원으로서의 중재법”, 무역보험연구 제15권 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김석철, “몽골중재제도의 주요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4호, 한국중재학회, 2013; 이시환,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재합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5; 오원석·이경화, “한·중 국제중재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5.

II. 한국과 몽골의 무역과 투자

한국과 몽골은 정치적 이념과 제도가 사회주의 공산국가체제를 갖추고 있던 199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특이한 교역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몽골이 1990년 시장경제체제 전환과 통하여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몽골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을 이룩한 나라로 평가받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²⁾

세계무역에서 몽골은 전세계 수출비중의 2014년 기준으로 0.03%도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비중도 1990년 이전에는 전세계 수출비중의 0.003%도 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면 두드러진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1990년 이후의 시장개방의 따른 것으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아 1990년 이전에 몽골의 전세계 대비 수입비중 0.005%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4년을 기준으로 수입비중은 0.03%를 넘고 있다.

<표 1> 몽골의 국제수출입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세계수출액	몽골		세계수입액	몽골	
		연간수출액	비중		연간수입액	비중
2014년	18,411,400	4,832	0.026	18,767,400	5,879	0.031
2013년	18,255,200	3,515	0.019	18,587,200	6,897	0.037
2012년	17,895,100	4,025	0.022	18,367,700	7,816	0.043
2011년	17,826,600	3,882	0.022	18,267,300	6,956	0.038
2010년	14,937,400	2,803	0.019	15,331,600	3,822	0.025
2005년	10,392,700	1,064	0.010	10,758,800	1,175	0.011
2000년	6,77,530	536	0.008	6,582,190	614	0.009
1995년	5,070,300	473	0.009	5,129,920	415	0.008
1990년	3,375,040	91	0.003	3,509,200	144	0.004

자료: 한국무역협회, 세계무역통계 참조.

2) 이재영·이시영,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443.

한편 한국의 무역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5,726억 달러이며 그 비중은 전세계 대비 3.1%를 넘고 있으며, 수입은 5,255억 달러로서 전세계 규모 대비 그 비중 2.8%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전세계 무역국가 183개국 가운데 수출은 6위에 해당하며, 수입은 9위에 달한다. 이는 2014년 기준으로 전세계 수출순위는 109위이며, 전세계 수입순위는 126위인 몽골과 크게 비교된다.

<표 2> 한국의 대몽골 수출입현황

(단위: 천달러)

구분	수출	수입	상품수지
2014년	346,808	23,585	323,223
2013년	399,472	26,958	372,514
2012년	433,457	53,598	379,858
2011년	349,874	60,623	289,251
2010년	191,631	38,839	152,792
2005년	77,621	4,895	72,726
2000년	54,672	2,077	52,596
1995년	27,957	9,693	18,264
1990년	515	2,191	-1,675
1988년	7	573	-567
1985년	0	544	-544
1984년	0	0	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참조.

1990년 이전에는 미미했던 한국과 몽골의 무역규모는 수교를 맺은 1990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몽골의 무역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의 경우에 2012년에 4억 3천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수입은 2011년에 6천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무역위축의 영향으로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몽골 수출은 약 3억 4천만 달러와 수입 약 2천 3백만 달러 규모이다. 이는 한국의 총 무역규모로 비교하면 그 비중이 0.1%가 되지 않는 미흡한 수준이며, 상품수지의 불균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몽골이 가진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함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지속적인 증가와 성장 그리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몽골 수출품목으로는 화물차량과 그 부품류, 광물성 연료로써 경유와 윤활유, 중장비 그리고 승용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류, 연초류, 기타금형, 페인트류, 플라스틱 제품, 광학기기 및 음료 등이 대표적인 교역품목이다.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목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재가 아닌 산업용이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몽골이 여전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경제구조 하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주요 산업재의 필요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몽골에서 화장품류나 귀금속 장식품류 그리고 연초류 등의 소비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한국의 대몽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	2014		2013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화물자동차	26,933	7.77	40,007	10.01	56,649	13.07
2	경유	18,733	5.40	17,942	4.49	11,319	2.61
3	건설중장비	16,422	4.74	24,792	6.21	50,732	11.70
4	윤활유	16,207	4.67	17,241	4.32	18,165	4.19
5	철구조물	14,941	4.31	12,084	3.02	13,194	3.04
6	승용차	11,820	3.41	24,731	6.19	38,492	8.88
7	화장품	10,281	2.96	10,096	2.53	8,084	1.87
8	연초류	9,724	2.80	6,289	1.57	5,965	1.38
9	기타금형	7,747	2.23	9,570	2.40	1,136	0.26
10	도료	6,995	2.02	6,258	1.57	4,115	0.95
총수출액		346,808	100.0	399,472	100.0	433,45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단, 품목구분은 MTI 4단위 기준) 참조.

한국의 대몽골 수입품목은 광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광물로서 몰리브덴과 그 정광은 특수강의 합금재료나 전자기재료 및 내열재료로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비금속 수입품목은 몽골의 특성이 반영된 부존자원의 금속 및 석회나 시멘트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외에 편직물, 천연섬유 원료로서 양모와 직물, 가죽 원피, 육류가공품과 한약재 그리고 목재 및 목탄 등이 수입되고 있다.

〈표 4〉 한국의 대몽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천불, %)

순위	품목	2014		2013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기타금속광물	11,674	49.50	19,703	73.09	44,710	83.42
2	기타비금속광물	5,461	23.15	4,439	16.47	4,313	8.05
3	폐건전지	1,973	8.37	561	2.08	-	0.00
4	동괴 및 스크랩	1,359	5.76	-	0.00	-	0.00
5	편직제의류	1,135	4.81	626	2.32	2,121	3.96
6	천연섬유원료	349	1.48	232	0.86	-	0.00
7	육류가공품	218	0.92	215	0.80	228	0.43
8	기타인쇄물	180	0.76	86	0.32	91	0.17
9	동물성한약재	132	0.56	-	0.00	-	0.00
10	기타섬유제품	102	0.43	39	0.14	536	1.00
총수입액		23,585	100.0	26,958	100.0	53,59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단, 품목구분은 MTI 4단위 기준) 참조.

몽골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201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중국은 몽골에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³⁾ 이는 몽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내몽골을 포함한 지리적 인접성 및 사회주의의 역사적 배경 등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불어 중국의 대외 투자 활성화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싱가포르 등이 전체 투자비중의 5% 이상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별 투자금액 순위로는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 비중으로는 2.9%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국가별 대몽골 투자건수로 본다면 2012년 6월 기준 총 투자 건수는 2,100여 건으로 총투자건수 대비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49.1% 다음으로 높은 투자 건수이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몽골 투자활동의 특징은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김석철,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12, p. 59.

<표 5> 한국의 대몽골 업종별 누적 투자현황(2015년 9월 기준)

(단위: 건, 천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광업	247	47	281,076	117,165
도매 및 소매업	280	132	130,900	72,410
건설업	146	70	93,513	54,6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5	43	89,779	37,074
출판,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9	17	42,659	27,433
제조업	140	80	61,400	21,473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23	8	34,658	20,10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9	39	21,186	16,605
운수업	34	14	17,060	12,699
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29	17	19,709	12,097
숙박 및 음식점업	17	13	9,657	7,344
농림업 및 어업	50	12	9,152	4,465
합 계	1,289	527	823,237	410,9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참조.

한국의 몽골에 대한 투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광업이 두드러진다. 이는 몽골이 세계 10대 부존자원 보유국으로서 가지는 미개발된 자원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유인되고 있는 특성을 한국에서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통시장 및 도소매업에 진출하거나 건설 및 부동산 기타 사회적 인프라인 통신과 정보서비스 분야 등이 주로 관심 분야로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몽골에서의 무역분쟁과 상사중재제도

1. 몽골에서의 무역과 무역분쟁

외국기업들에게는 몽골이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의 이점과 함께 산업화에 요구되는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정 등에서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의 투자자들에 의해 부존자원의 매력을 풍기는 몽골에 대한 투자 및 국제상거래활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경향은 의

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몽골이 가지는 현실적 경제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이지만은 않다. 국제시장에서 몽골의 자원수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 수요의 증가 등으로 몽골의 경상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의 외환보유고는 취약한 편이다. 외국인 기업의 경우 투자자로서도 몽골 정부의 정책 혼선 및 분쟁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몽골 총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쟁취함으로써 외국회사와 맺었던 계약무효화 움직임 등 개발도상국이 갖는 국가위험(country risk)이 노출되기도 한다.

한국기업의 사례에서 울란바타르 고층빌딩을 짓기로 한 국내 중견건설사는 발주처에 공사대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 공사기한 지연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으로 손해를 보고 철수했다. 또한 수시로 협상내용을 바꾸는 몽골의 수입상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기업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다.⁴⁾ 이에 따라 한국의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몽골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위험 역시 잠재하고 있음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무역분쟁해결로써 중재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중재클레임 다발국가는 13건의 중국과 7건의 미국 등이다. 몽골 관련 2004년이후 2013년까지 총 4건이 접수되었다.⁵⁾ 한국기업이 신청한 중재는 3건이며, 몽골기업이 신청한 중재가 1건이었다. 중재신청의 원인은 물품의 대금지급 청구, 서비스나 용역대금 등 대금미지급에 따른 대금결제 요청 등이며 중재에 의한 판정으로 3건이 처리되었으며, 1건은 당사자들의 분쟁해결 합의에 따른 화해 판정으로 해결되었다.

현재의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과 몽골의 무역거래 하에서 무역분쟁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향후 기대되는 양국의 경제적 보완과 협력 및 동반성장관계는 무역과 투자활동의 증대와 함께 분쟁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분쟁의 예방과 분쟁해결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4) KOTRA 울란바타르 무역관, 한국경제신문, 2014년 5월 2일 기사 참조.

5) 김석철, 전계논문, p. 60;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통계자료 참조.

2. 몽골 중재제도의 발전

1) 몽골의 외국인투자과 분쟁해결제

1990년 이후 몽골은 빠르게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민법체계를 수용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는 필요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다.⁶⁾ 몽골은 1997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자유무역경제체제에 편입되었으며 적극적인 개방경제와 국제무역질서를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취약한 자본과 기술부족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몽골은 외국인투자법을 1990년에 채택하였고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투자환경을 만들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몽골 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관계를 조성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분쟁을 중재법원의 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에 관한 내용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주요 규정 사항이다. 몽골은 1991년 6월 14일에 “국가 및 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워싱턴협약”(Washingt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s, ICSID) 체약국으로서 서명과 함께 발효되었으며, 1999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보장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에 가입하여 해외투자자는 국제투자보장기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보장을 하고 있는 경우 정부 및 외국인 투자자들 간의 분쟁은 외국의 중재법원에서 해결한다. 중재법원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중재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법률로서 보장한다.⁷⁾ 외국인투자자에게 무역분쟁에 관한 중재에 의한 해결과 국제협약의 체약국으로서의 의미는 분쟁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킬 수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6) Altanstsseg Dashdor J, “Arbitration in Mongolia”,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ume 20 Issue 4,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p. 421; 독일과 러시아 법제의 영향에서 최근에는 영국, 캐나다 및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라이선스, 금융, 투자유형에 따른 조세제도 등 특수한 분야의 법적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다(www.mongolia.usembassy.gov 참조).

7) 몽골 외국인 투자법 제25조. 외국인투자자와 몽골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와 몽골법인, 개인과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사업체, 외국 법인사무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몽골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쟁당사자들에게 법원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관할에 관한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관할선택이 없는 경우 관할은 몽골법원이 된다(엔크타이반 잡크랑 “몽골의 외국인투자 법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 p. 44).

2) 몽골의 중재제도

몽골의 법원은 전통적으로 중재를 긍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국가로서 중재가 강제적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 이후 중재는 선택적인 분쟁 해결방법으로 긍정되고 있다.

몽골의 중재기관은 몽골상공회의소(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NCCI) 내 비정부적 및 비영리조직으로서 몽골 국제 및 국내 중재센터(Mongolian International and National arbitration Center, MINAC)이다.

초기 몽골의 중재기관은 1960년 7월 2일 몽골상업회의소의 외국무역중재법원(FTAC, Foreign Trade Arbitration Court)으로 설립되었다. 몽골의 대외무역중재법원(FTAC)은 COMECON(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회원국 사이의 경제 및 무역 분쟁해결이 주요 목적이었다. FTAC는 몽골과 외국 사이에 또는 외국 당사자들 간에 분쟁을 몽골에서 기관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담당하였다. 대외무역중재법원의 첫 중재사건이 1967년 이루어진 이후 1990년까지 연평균 15건의 분쟁을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이후 대외무역중재법원은 몽골 이외의 외국당사자를 포함하는 분쟁을 중재하기 시작하여 몽골의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 분쟁을 중재하면서 매년 30건의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여 왔다.⁸⁾

이후 2003년 5월 9일 ‘1985 UNCITRAL 모델중재법’에 따라 새로운 중재법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중재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중재기관으로서 몽골국내외중재법원(MINAC, Mongolian International and National Arbitration Center)으로 대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MINAC는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국내에 지부성격을 갖는 21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⁹⁾

뿐만 아니라, 몽골은 1958년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몽골의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체약국간에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 몽골은 1994년 10월 24일 뉴욕협약에 비준하였으며, 1995년 1월 22일 발효되었다. 다만, 몽골은 뉴욕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적용유보선언으로서 뉴욕협약은 체약국간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계약적이든 비계약적이든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른 상사관계에 관한 법적관계에서 야기되는 분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몽골에서의 국내 및 국제중재 판정은 뉴욕협약의 156개 체약국 법원에 의해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¹⁰⁾

8) 몽골의회는 1995년 ‘외국무역중재법원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다. Altanstsseg Dashdorj, *op. cit.*, pp. 421-428.

9) 몽골상공회의소 자료 참조, www.mongolchamber.mn/en/.

3. 한국의 중재법과 몽골의 중재법 비교

우리나라의 중재법은 국내외 상사분쟁을 중재로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의 증대가 기업의 국제적인 추세임을 고려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과 선진 입법례를 적극 수용하여 중재법을 구성하고 있다. 몽골 역시 2003년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1985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적극 수용한 중재법을 구성하고 있다.

1) 중재법의 적용과 대상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¹¹⁾ 반면에 몽골 중재법은 법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한 유체재산과 무체재산에 관한 분쟁¹²⁾을 중재로 해결함을 목적인다. 중재 가능한 대상 범위는 법정지국의 법률에 의하여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¹³⁾

우리나라의 중재법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로서 중재합의의 존재에 관한 항변이나 법원의 보전처분의 신청에 관하여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외국의 중재판정에 관한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도 본 법의 적용된다. 몽골 중재법은 몽골의 헌법과 민사소송법, 판결집행법 등 기타 몽골법제와 부합하여야 한다.¹⁴⁾ 몽골 중재법에서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재의 정의규정에서도 국제중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몽골 중재법은 국내외 중재를 모두 포괄한다. 또한 몽골당사자를 포함하는 경우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상반되는 경우에 국제조약이 우선한다.¹⁵⁾

중재합의는 계약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합의의 시기는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재조항을 삽입하거나 분쟁

10) 2015년 12월 기준 UNCITRAL 뉴욕협약 1958 체약국 현황, www.uncitral.org 참조.

11) 한국 중재법 제1조.

12) 몽골 중재법 2003 제1조.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전제로 중재에 대한 제한규정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형사분쟁과 가사분쟁은 몽골에서 중재가 될 수 없다.

13)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중재가능성의 여부는 중재판정부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법원에 의해 다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재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재절차에 따른 중재판정은 관할법원에 의하여 국가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사건의 경우라면 취소가 될 수 있다. 한국중재법 제36조 2항, 몽골 중재법 2003 제2조 1항, 제40조 2항.

14) 몽골 중재법 2003 제2조 1항.

15) 몽골 중재법 2003 제2조 2항.

발생 이후 중재약정을 통하여도 가능하다.¹⁶⁾ 중재합의의 내용은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중재절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법과 몽골 중재법은 중재합의 방식은 UNCITRAL 모델중재법과 같이 유효한 중재합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분쟁이 야기된 이후 혹은 분쟁 발생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¹⁷⁾ 몽골 중재법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의 서면의 문서에 구성되거나 편지, 텔렉스, 전보, 또는 합의한 기록을 제공하는 기타 통신수단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서의 교환으로 중재합의의 존재가 일방당사자에 의해 주장되고 타방당사자가 부인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¹⁸⁾

2)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역할

우리나라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수와 절차를 정할 수 있다.¹⁹⁾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²⁰⁾ 이에 대해 몽골 중재법에서 중재판정부는 단독중재인 혹은 다수중재인으로 구성하는 중재판정부로 이루어진다.²¹⁾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²⁾ 몽골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으로 선정이 제한되는 당사자들을 특히 규정하고 있다.²³⁾

우리나라 중재법에서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그 유효성에 대하여 자기결정권한을 가진다.²⁴⁾ 이와 관련하여 몽골 중재법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법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자기권한결정권을 가진다.²⁵⁾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항변은 변론진술서를 제시한 이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권한

16) 몽골 중재법 2003 제11조.

17) 우리나라 중재법 제3조 2항, 제8조.

18) 몽골 중재법 2003 제11조.

19) 우리나라 중재법 제11조, 12조.

20) 우리나라 중재법 제12조 1항.

21) 몽골 중재법 2003 제4조 1항 4호, 제14조 1항.

22) 몽골 중재법 2003 제14조 3항, MINAC 중재규칙 제12조 3항. MINAC는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여 약 150명의 중재인 페널 보유하고 있으며, 중재인의 임기는 3년이다.

23) 몽골 중재법 2003 제15조 2항.

24) 우리나라 중재법 제17조.

25) 몽골 중재법 2003 제20조.

범위를 넘는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 중재절차 중에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중재판정부가 예비적 혹은 중재판정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중재인이나 중재기관의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중재법이나 몽골의 중재법에서는 그 책임과 면책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적으로 해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중재인이 고의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²⁶⁾ 실무적으로 중재인과 중재기관은 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몽골중재법에서는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3) 중재절차와 법원의 지원

우리나라 중재법과 동일하게 몽골 중재법에서 중재절차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접수 통지받은 날로부터 개시된다.²⁷⁾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에서의 중재지는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²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편의와 당해 분쟁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에 의해 정해진다. 중재인이나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분쟁 물품과 관련 서류에 관한 조사의 경우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재지가 아닌 장소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중재언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르게 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게 된다.²⁹⁾ 하지만 몽골 중재법에서는 중재언어는 몽골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중재언어를 지정하는 상황이 배제되고 있다.³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에서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³¹⁾ 몽골 중재법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

26)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6, pp. 162~163.

27) 우리나라 중재법 제22조, 몽골 중재법 2003 제25조 1항.

28) 우리나라 중재법 제21조 1항, 몽골 중재법 2003 제24조.

29) 우리나라 중재법 제23조에서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언어를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고,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몽골 중재법 2003 제26조.

31) 우리나라 중재법 제18조.

으로 적절한 조치로써 임시적 처분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³²⁾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명령은 몽골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명령권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³³⁾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법원의 관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다.³⁴⁾ 반면에 몽골 중재법에서는 법원의 개입이나 지원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³⁵⁾ 즉, 법원은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 선정된 중재인에 관한 절차적 위법이나 선정 실패, 중재인의 철회, 중재인의 불이행이나 태만, 당사자들의 결정 불수용과 중재판정의 집행보장, 문서증거제시 요구, 중재판정의 무효항변, 중재판정의 확정과 그 집행 또는 이에 대한 거절에 관하여 법원의 개입이나 지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³⁶⁾

중재절차의 종료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거나, 당사자들에 의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³⁷⁾ 한편 몽골 중재법에서는 이와 함께 기정 기간 내 중재비용이 예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재절차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⁸⁾

4)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신청한 중재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서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법에서는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하여 내려진 국내중재판정의

32) 몽골중재법 2003 제21조.

33) 몽골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적 처분을 취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아닌 중재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임시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34) 우리나라 중재법 제6조.

35) 몽골 중재법 2003 제8조.

36) 몽골 중재법 2003 제15조 5항과 7항, 제17조, 제18조 2항, 제20조 6항, 제13조, 제33조, 제40조, 제43조.

37) 몽골 중재법 제38조.

38) 몽골 중재법 2003 제38조 2항 4호. 반면에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제46조에서 중재비용의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납금은 당사자 균분하여 납입한다. 일방당사자가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판정부와 협의 후 중재절차의 중지 또는 종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중재판정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집행을 허용한다.³⁹⁾ 우리나라 밖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뉴욕협약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외국판결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그 집행에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⁴⁰⁾

반면에 몽골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유형으로서 임의중재판정과 최종중재판정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한 법률에 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당사자들간에 적용할 법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쟁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 국내법을 적용하여 판정을 내리게 된다.⁴¹⁾ 몽골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진다.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항소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⁴²⁾ 다만, 집행의 청구는 3년의 제척기간을 가진다. 이는 국내중재판정이나 외국중재판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뉴욕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몽골은 상호주의에 따라 체약국의 영토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절 사유로는 몽골중재판정의 집행거절사유와 동일하며 이는 뉴욕협약의 거절사유와도 다르지 않다. 규범적으로 몽골에서의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하며, 몽골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다르지 않다.

5) 기타 중재법제의 주요 특징

몽골 중재법은 UNCITRAL 모델중재법을 기반으로 하고 2003년 개정되어 있지만 모델법 규정에 추가되어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인의 자격은 공정하고 독립적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⁴³⁾ 반면에 몽골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의 중재인 자격제한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⁴⁴⁾ 또한 몽골중재법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합의는 계약의 유효성과 별개로 유효하다고 중재합의의 분리독립성을 특히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⁵⁾

이와 함께 몽골 중재법에서는 기관중재와 임의중재를 별도로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다.⁴⁶⁾ 중재절차에 관하여 기관중재절차와 임의중재절차가 동일한 원칙에 따

39) 우리나라 중재법 제38조.

40) 우리나라 중재법 제39조.

41) 엔크타이반 잡크랑, 전계논문, p. 51.

42) 몽골 중재법 2003 제43조.

43) 우리나라 중재법 제12조 및 제13조,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1조 1항 및 제12조.

44) 몽골중재법 2003 제15조 2항.

45) 몽골 중재법 2003 제11조 5항.

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실무적으로 몽골에서 임의중재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적 환경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중재와 소송은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구분되는 별개의 분쟁해결 방법이기에 소송절차법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몽골중재법에서는 여전히 중재신청에 관하여 그 내용에 관한 요건으로 몽골민사소송법 규정과 동일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⁴⁷⁾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중재법에서는 중재절차에서 획득한 정보의 기밀유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몽골 중재법은 중재절차의 기밀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와 중재의 당사자들은 중재절차 중에 드러난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의 비밀스럽고 기밀한 정보에 대한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⁴⁸⁾

4.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과 몽골의 MINAC 중재규칙 비교

1) 중재규칙의 국제성과 실체법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과 몽골의 MINAC의 중재규칙은 전반적으로 UNCITRAL 중재모델법과 중재규칙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제적 표준에 양국의 중재규정이 근접해 있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분쟁사건을 판단하는 중재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실체법과 법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의해 실체법과 함께 법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중재판정부는 선의의 중재인으로서 권한을 가지며 형평과 선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⁹⁾ 다만, 형평과 선에 의한 판단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의 중재규칙에서는 준거법에 관한 선택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규정하고 있음에는 상이하지 않으나, 적용 준거법이 법(law determined)을 따라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거래에 적용되는 무역관습을 고려하도록 준거법

46) 몽골 중재법 2003 제4조 1항 1호 및 2호.

47) 몽골 중재법 2003 제27조 2항.

48) 몽골 중재법 2003 제32조.

49)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5조 3항.

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⁵⁰⁾ 이와는 별개로 우의적 중재인에 관한 규정은 중재규칙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중재절차의 개시와 중재지

중재절차의 개시일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서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일자로 규정하고 있다.⁵¹⁾ 반면에 몽골의 MINAC 중재규칙은 피신청인이 중재센터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에 중재가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²⁾ 이와 더불어 몽골 중재규칙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즉 피신청인이 통지수령하여 중재가 개시된 이후 60일 이내에 중재판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³⁾

중재절차의 개시 전제조건으로서 분쟁에 관한 당사자들의 중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⁵⁴⁾ 이는 몽골의 중재규칙에서도 다르지 않지만 몽골의 중재규칙에서는 서면합의란 무엇인지를 언급함으로써 서면합의의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⁵⁵⁾

중재지를 선택하는 규정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서울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⁵⁶⁾ 다만, 중재지와 달리 중재의 개최 장소는 당사자들과 협의 하에 중재심리나 기타 회의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⁵⁷⁾ 반면에 몽골의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해 사건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가 중재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⁵⁸⁾하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50) 몽골 MINAC 중재규칙 제4조 4항.

5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8조 2항.

52) 몽골 MINAC 중재규칙 제24조 1항.

53) 몽골 MINAC 중재규칙 제25조 1항. 다만, 상기 중재판정의 기한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혹은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부가 연장할 수 있다.

54) 개정이전의 국제중재규칙 2007의 적용범위규정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국제중재규칙을 따르도록 규정되었으나, 2011년 개정국제중재규칙에서 국제중재는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국제중재규칙 2011 제3조 참조).

55) 몽골 MINAC 중재규칙 제2조 3항.

5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8조 1항.

57) 적용준거법이나 관할법원이 관계되는 중재지와 달리 중재절차 중의 개최장소는 청문과정이나 조사, 회의 등을 위한 편리하다고 고려되는 적절한 기타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58) 몽골 MINAC 중재규칙 제23조 2항.

3)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당사자 대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은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인이다.⁵⁹⁾ 반면에 몽골 중재규칙 역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1인 혹은 복수의 중재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 수는 3인을 원칙으로 한다.⁶⁰⁾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과 몽골 MINAC 중재규칙에서 특히 중재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당사자들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대우규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부여하며 공평한 진술 권리를 부여하는 적절한 방식의 중재절차의 진행을 규정하고 있다.⁶¹⁾

이에 대하여 몽골의 MINAC 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의 대우와 관련하여 한 조문으로 분쟁당사자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⁶²⁾ 즉,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문에 관련한 서류를 검토하거나 의장중재인의 허락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질의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전문가의 선정이나 중재심리의 연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중재인을 포함하여 전문가와 통역사의 기피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취지의 변경이나 신청금액의 증감, 중재신청의 철회 또는 철회취소 그리고 피신청인과의 화해를 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의 경우에도 중재신청인과의 화해를 포함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이의제기 대응중재신청의 권리를 가진다.

4) 중재판정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과 몽골 MINAC 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서면형식 및 중재판정의 과반수에 의한 의사결정방법 등은 서로 다르지 않다. 또한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해서도 거의 비슷하다. 다만 중국판정의 기한에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가운데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리도록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⁶³⁾

이와 달리 몽골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에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판정의

59)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1조.

60) 몽골 중재규칙 제12조 3항.

6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0조 2항.

62) 몽골 MINAC 중재규칙 제21조(당사자 동등대우).

63)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3조 1항.

기한의 기산시점과 관련하여 몽골의 중재규칙은 피신청인이 중재신청 통지를 받은 날 이후를 기산점으로 60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중재판정의 기산시점인 중재심리 종결일이 최종 서면 제출일자를 기산점으로 45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는 구별된다.

5) 중재판정의 거절이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판정에 따라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에 당사자의 자율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을 청구하여 집행을 도모하게 된다. 한국과 몽골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은 확정적 법적 효과를 가지며 중재판정의 취소 이외에는 항소할 수 없다. 한국의 중재법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 및 법원의 직권으로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몽골의 중재법의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서 당사자의 무능력이나 중재 합의 무효, 적절한 통지의 부재,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거나 몽골 국내법에 따라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재판정이 몽골의 공공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등을 근거로 당사자들이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중재판정의 취소요구에 대하여 취소근거인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⁶⁴⁾ 한국의 중재법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인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몽골중재법에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중재판정의 취소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취소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 한국과 몽골은 공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양국간에 보장된다. 몽골은 1995년 1월 이후 뉴욕협약이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이보다 이른 1973년 5월 9일 발효되었으며, 양국 공히 뉴욕협약의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상호주의 원칙과 체약국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상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을 선언하고 있다.⁶⁵⁾

64) 몽골 중재법 2003 제40조 2항.

65) 뉴욕협약 체약국은 2014년 5월 현재 149개국이며, 뉴욕협약의 제1조 3항의 유보조항을 선언할 수 있다.

IV. 몽골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응

몽골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분쟁과 같은 사안에서는 중재를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이 선호되고 있다.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한 분쟁해결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법원은 전통적으로 중재를 지지해왔기 때문에 법률가나 판사들의 중재에 대한 문화는 오래되었으며, 이는 국제중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몽골의 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법적 문제점들과 그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재를 통하여 그 해결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구하는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을 고려하지만, 몽골에서의 분쟁해결이 언제 완료될 것인지를 확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몽골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최종적인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드문 경우가 아니다. 당사자들 간에 ADR제도를 활용한다면 1주일 이내에 분쟁의 해결을 구할 수도 있지만, 광업 분쟁에서는 6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⁶⁶⁾ 불확실성은 이행과정의 잠재적 위험으로 인하여 몽골을 중재지로 선정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몽골에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신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해결의 신속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으로서 *Khan Resource*사 사건⁶⁷⁾에 대한 그 승인과 집행에서 몽골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둘째, 중재서비스의 국제성과 전문성의 부족이다. 몽골은 국제적으로 복잡하고 세밀화되고 있는 분쟁문제로서 전문적인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사, 금융, 건설, 플랜트, 기타 서비스 등 더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국제상거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역사와 국제상사분쟁의 경험이 짧다.

그리고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며, 몽골 당사자들은 조정이나 협상에 개념이 친숙하지 않으며 ADR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예를 들

66) 몽골울란바토르주재미대사관, 2015년 투자환경보고서, <http://mongolia.usembassy.gov/ics2015.html> 참조.

67) PCA Case No. 2011-09로서 중재판정은 2015년 3월에 내려졌으며, 몽골에 1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판정하였다.

어 조정-중재(Med-Arb)와 같은 계층적 분쟁해결약정은 가능하지만 몽골에서 조정은 분쟁해결의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따라 인적 전문가 확보와 중재인의 양성을 통하여 중재인의 자격을 보다 강화하고 특화함으로써 국제적 전문성의 확보와 국제상거래 및 외국인투자자들과의 분쟁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몽골의 MINAC의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법률적 측면의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중재기관으로서 유일한 몽골의 MINAC의 물적 시설의 꾸준한 정비와 보완을 통하여 정보통신 환경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중재서비스의 질적 증대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몽골의 법무부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에 관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분쟁해결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⁶⁸⁾ 이와 함께 중재제도를 포함하여 ADR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재서비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으로써 국제적 신뢰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몽골의 중재제도에 대한 대외적 평가는 여전히 무역당사자들이나 해외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몽골 자국민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대부분의 중재는 몽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을 중재지로 합의하는 것은 외국당사자가 외국중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극히 이례적이다.⁶⁹⁾ 외국당사자를 포함하는 중재를 위한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외중재에서 몽골이 중재지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당사자에게는 몽골을 중재지로 하여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데 따른 공정성과 집행에서의 정부의 협조에 대한 불안정성도 몽골에서의 국제중재를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 중재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제중재에서의 법원의 간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법원개입을 제한하도록 하며, 대외적으로 외국의 당사자들이 국제중재의 중재합의의 효력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보장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몽골의 중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도로서 몽골상공회의소로부터 몽골 중재기관을 독립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⁷⁰⁾

68) 몽골상공회의소, 몽골중재해설, 2012. 11. 20. p. 10(<http://en/mongolchamber.mn/documents>) 참조.

69) PCA Case No. 2011-09, Khan Resources Inc., Khan Resources B.V., and Cauc Holding company Ltd. v. The Government of Mongolia, 2015년 3월 캐나다의 알루미늄광산회사와 몽골정부간에 중재판정은 UNCITRAL 산하의 국제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서 판정이 이루어졌다. 당해 중재판정에 대하여 몽골정부는 중재법원의 중재판정의 구속력 무효를 구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중재의 명성에 흠을 내고 있다.

70) 이는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의 변화과정에서도 보여지는 일반적인 성장과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발족한 이후

넷째, 중재법제의 국제적 인정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몽골 중재법은 현재 2003년 중재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UNCITRAL 중재모델법 1985년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UNCITRAL에서는 중재모델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 몽골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즉, 몽골중재법의 국제화는 몽골의 자체적인 평가일 뿐이다. MINAC 중재절차는 몽골에서의 국제중재에 적용가능하다. 다만, 몽골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하는 외국의 당사자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몽골이 중재모델법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UNCITRAL 중재모델법 수용 국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몽골 중재법의 국제적 위상 증대를 위하여 공인(official)된 영문본 중재법의 제시와 함께 국제적으로 널리 확립되어 있는 기준과 현대적 중재제도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중재제도의 국제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임의중재의 실체적 이행성 보장이 요구된다. 몽골의 중재는 기관중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의중재는 몽골에서는 거의 시행이 되지 않았다. 2003년 중재법에 따라 임의중재(temporary arbitration)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특정 시점에 특별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중재를 의미한다⁷¹⁾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중재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모든 중재는 MINAC에 의한 기관중재로 수행되고 있다.

몽골의 유일한 중재기관인 MINAC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관중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임의중재도 가능하다.⁷²⁾ 그러나 몽골에서 임의중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희박하다. 왜냐하면 중재법이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중재법 2003에서 임의중재가 몽골에서 이행될 수 있으며, 임의중재를 정의하고, 임의중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⁷³⁾ 몽골상공회의소의 MINAC는 몽골에서 반세기가 이상의 경험을 축적한 유일한 중재기관이다. 현행의 몽골 중재법에 따라 다른 중재기관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 그와 같은 중재기관의 결정이 인정되지 못할

1970년 3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설립되고, 1980년 8월 29일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71) 몽골 중재법 2003 제4조 1항 2호.

72) Zhou Yongxiu, "Ad hoc arbitration in Mongolia : a procedural overview", *The Mining Law Review*, Anderson & Anderson LLP, 2013. 11, pp. 312~316(www.anallp.com).

73) 몽골 중재법 2003 제5조 7항에서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임의중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5조 8항에서 기관중재와 임의중재의 중재절차는 동일한 원칙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몽골중재법에만 규정되고 있는 이례적인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중재기관으로 인하여 중재제도의 위상과 명성을 추락시킬 염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몽골의 중재기관으로 유일한 MINAC를 적극중재기관으로서 특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함과 아울러 임의중재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임의중재규정을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몽골중재법의 임의중재에 관한 이례적인 규정으로서 기관중재와 임의중재의 절차가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⁷⁴⁾을 삭제하는 것이 몽골 중재법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여섯째, 국제적으로 널리 논의되고 있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실효적 보장이다. 몽골의 중재법 제13조에 따라 임시적 처분의 인정되고 있지만, 몽골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명령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임시적 처분은 법원을 통하여 행해진다. 법원의 중재에 대한 지원에 주요 분야가 임시적 처분의 인정으로 중재법 제13조와 민사소송법 제69조⁷⁵⁾에 의한 것이다.⁷⁶⁾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명령권의 실질적 활용과 그 이행력을 규정하고 있는 UNCITRAL 중재모델법 2006의 개정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몽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법원의 개입없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규정이 요구된다. UNCITRAL 중재모델법은 2006년 개정규정을 통하여 임시적 처분과 예비적 명령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UNCITRAL의 규정의 개정은 중재의 실효적 가치를 높이고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적 중재제도의 경향을 수용하고자 하는 많은 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UNCITRAL 중재모델법 개정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논제로 판단된다.⁷⁷⁾

일곱째, 중재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적 표준의 수용에 관한 문제이다. 몽골은 제도적으로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중재법제를 개정하였다. 몽

74) 몽골 중재법 2003 제5조 8항.

75) 몽골 민사소송법 제69조에서 관할법원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법원 결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로는 첫째, 청구금액에 동일한 금액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금전이나 소유물을 압류하거나 둘째, 청구금액에 동일한 금액에 관하여 그 재산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행위를 취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셋째, 청구금액에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의 금융계정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넷째, 당사자에게 사전에 법원에 지급금액의 예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임시적 처분에 직면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69조에 특정된 담보의 유형을 대체하여 다른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행계정 정지를 대신하여 법원에 선지급 금액의 예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76) 몽골상공회의소, *Arbitration of Mongolia*, 2012. 11, pp. 8-9.

77) Yulchon, "Arbitration in Mongolia", *Working Paper*, Ministry of Justice, 2013. 12, pp. 77-78.

골의 경제개방과 대외무역 관계의 확대 및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따라 중재법의 현대적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몽골의 중재법에 기초가 된 UNCITRAL 모델 중재법 1985는 새로운 중재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2006년 개정된 상태이다.⁷⁸⁾

이에 따라 몽골의 중재법의 개정은 중재제도의 현대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의 이해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⁷⁹⁾

이외에도 몽골 중재법제의 추가적인 논제로서 ICC 중재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긴급중재인 제도와 몽골의 부존자원의 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과정에 따른 건설, 플랜트, 산업설비의 거래와 관련하여 특히 다수당사자 중재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중재법제로의 채택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V. 결 론

몽골은 아시아의 주요 자원부국으로서 경제적 성장잠재성과 대외시장개방 및 경제개혁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게는 매력적인 교역대상국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몽골이 1990년 수교와 함께 상호 협력의 증대와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몽골의 잠재성 및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공업화 경험 및 자본력에 비하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투자건수 대비 투자금액을 분석할 경우 다양한 유형에 소규모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진출 유형이 다양한 분야로 투자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몽골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비하면 투자금액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만족스러운 규모가 되지는 못하다.

몽골의 성장잠재력에 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치 못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몽골의 자원 수출의 저조 등 경상수지의 적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78)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개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 임시적 처분의 실질적 규정의 보완, 정보통신환경에서의 중재합의 형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www.uncitral.org 참조).

79) 이와 관련하여 몽골은 새로운 중재법이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중재법을 통하여 몽골의 민사 소송법과 중재법의 상호 관계를 증진하고 중재에 우호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이 소송이 아닌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이해하며 선호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에 관하여 명료히 하는 것이다(B. Amarsikhan, "New version of Law on Arbitration submitted", *News of Montsane*, 2015. 12).

액의 둔화 등으로 몽골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현지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입물가의 상승은 몽골경제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경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국 투자자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외국인 투자유입에 따른 분쟁도 적지 않게 야기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교역규모가 증대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가능한 상거래 관련 분쟁 해결제도로서 소송보다 권장되는 중재제도를 더욱 주목하게 된다.

한국과 몽골의 중재제도가 양국의 무역당사자 및 투자자들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 양국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뉴욕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복잡한 소송에 비하여 훨씬 유용하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의 증진과 질적 확대를 통하여 양국의 사회발전과 경제적인 상호협력적인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궁깃뜨마, “한·몽 중재제도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6.
- 김석철,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 4호, 한국중재학회, 2013. 12.
- 김선정, “몽골의 국제상사분쟁해결법원으로서의 중재법”,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 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 김중년, “주요 외국중재기관의 규칙 개정 현황에 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4 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12.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6.
- 몽골상공회의소, “Arbitration of Mongolia”, 2012. 11.
- 몽크나산, “몽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한·몽 투자협력 증진 방안”, 국제금융위협 관리 제10권 제1호, 한국수출보험학회, 2009. 3.
- 소드눔 돌진, “몽골투자법제 해설과 실무연구”, 법제교류 연구 09- 17,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 시네바야르, “한국과 몽골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8.
- 엔크타이반 잡크랑, “몽골의 외국인투자 법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2.
- 오원석·이경화, “한·중 국제중재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5.
- 이재영·이시영,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황지현·박은옥,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 시 투자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8.
- Altanstsseg DashdorJ, “Arbitration in Mongolia”,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ume 20 Issue 4,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 Ulaanbaatar Mongolia, *2015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5. 5.
- Kim Kwangsoo, “A Study on the Task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17 No. 1,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2007. 3.

MNCCI, "Arbitration of Mongolia", *Documents from Mongolia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1.

Yulchon, *Arbitration in Mongolia*, Working paper, Ministry of Justice, 2013. 12. 4.

Zhou Yongxiu, "Ad hoc arbitration in Mongolia : a procedural overview", *The Mining Law Review*, Anderson & Anderson LLP, 2013. 11.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ial Arbit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Byoung-Uk YU

The Mongolia is one of the highly impressive potential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ccording to open the economic market. Since early 1990 as the falling apart from Russian union, Mongolia has tried to developing economic status with plentiful stocked natural resources in their country.

The Mongolia has been accepting the modernizing their legal systems including national amended law of arbitration 2003 which was based i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to harmoniz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rends.

However, UNCITRAL council announced the adapting members countries excluding Mongolia caused by the inappropriate international standard conditions. As the foreign business partners with Mongolian, it is not easy to agree a site in Mongolia for the place of arbitration on their disputes settlement cause by the weak confidence and precarious interruption under the arbitration processing and enforcement of award on the uncertain law of arbitration on their law of arbitration.

Recently, the Mongolian government intends to revise their arbitration law to comply to newly UNCITRAL Model Law in 2006 revision for improving the putting confidence and promoting the choosing arbitration on the place of commercial disputes in Mongolia.

It is the point to considering in this article to compare to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ways to the legal and practical arbitration services for reliant and confirming arbitration system in Mongolia for the business parties of Korea.

Keywords : Mongolian Arbitration Act, MNCCI, MINAC, UNCITRAL Model Law